

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희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54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성희제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김경, 김규남,  
김성준, 김원태, 민병주,  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 
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  
오금란, 왕정순, 유정희,  
이민옥, 이영실, 이용균,  
이원형, 이종환, 임규호,  
정준호, 최민규, 최재란,  
한신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문화·관광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- 특히, 도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 축제는 교통통제·차량우회·대중교통 조정 등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나, 부서 간 협의 및 시민 안내 체계가 부족함.
- 또한, 축제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적정성 기준이 없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.
- 이에, 교통관리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·지원체계에 반영하여,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축제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, 관계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통제, 차량 우회,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필요 한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 (안 제16조제4항 신설 ).
- 나.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에 한하여 축제의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함 (안 제18조제3항제 10호 및 제4항 신설).
- 다.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의 기능에 ‘대중교통·주차·교통우회 및 통제 정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의 제공’을 추가하고, 교통혼잡 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능을 적용하도록 함 (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,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통제, 차량 우회, 대중교통노선 조정 등 필요한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0.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

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.

제2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6. 대중교통·주차·교통우회 및 통제 정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

## 의 제공

③ 제2항제6호의 기능은 교통통제 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~ ③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,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할 경찰 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 통통제, 차량 우회, 대중교통노 선 조정 등 필요한 교통관리 대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생 락)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여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 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. 1. ~ 9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 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 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 다.
④ (생 략) 제20조(축제지원센터의 설치) ①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20조(축제지원센터의 설치) ①

(생 략)

② 축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6. (생 략)

<신 설>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대중교통·주차·교통우회 및 통제 정보 안내 등 교통 관련 시민편의 제공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③ 제2항제6호의 기능은 교통통제 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8조(축제의 평가)	△	축제평가 관련 비용이 발생하거나 교통혼잡 예상 축제의 발생빈도에 따라 평가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객관적 추계가 곤란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제18조(축제의 평가)의 축제평가 관련 비용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예술과)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(참고)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교통혼잡 발생정도에 따라 평가관련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평가와 관련된 통상적 사례를 통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